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	비고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	
일반 공급 가점제	○		서약서	본인	* 각 청약별 자격확인	건본주택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* 용도: 주택공급신청용 ※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	
	○		인감도장	본인	*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	
	○		신분증	본인	*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	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*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	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*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	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*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“상세”로 발급 - 미혼, 이혼, 사별, 단독세대,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	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* 주민번호 전체 표시 / 발급기간: 입주민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(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) - 발급기관: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가능	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*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사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	
		○	출입국사실증명서	직계존속	*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발급기간: 입주민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개년도 발급 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	
		○	출입국사실증명서	직계비속	*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발급기간: 입주민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개년도 발급 (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)	
	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*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*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피부양 직계존속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 - 미혼인 만30세 이상 직계비속(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)	
		○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	* 피부양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으나,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피부양자와 주민등록표상에 분리된 경우 -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를 표기하여 “상세”로 발급	
		○	혼인관계증명서	본인 직계비속	*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“상세”로 발급 *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“상세”로 발급	
		○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*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경우	
대리 계약 추가 서류	○	계약자 인감증명서(위임용) 및 인감도장	-	※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- 인감증명서 용도: 아파트 계약 위임용 ※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,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.	건본주택 비치	
	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-	- 대리인: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/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		
		위임장	-	-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(계약체결 장소 비치)		
부적격 통보	○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 주택	-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- 소형·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신청자 구비	

※ 청약자격 및 모든 요건 등의 기준은 ‘입주민모집공고일’입니다. (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)